

서초구 공고 제2025-1553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[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243호(2025. 7. 24.)]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일
서 초 구 청 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: 서초구 관내 신속통합기획 선정지(123,988.1㎡)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서울특별시	서초구	서초동 1315일대(서초진흥아파트)	38,657.1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선정지
		잠원동 73일대(신반포2차아파트)	85,331.0	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5년 8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□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 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

2. 서초구 잠원동 73 일대(신반포2차아파트)

